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12월 27일 23시 37분



목차

목차	2
건설기계등록	3
기본사항	3
구비서류	3
민원관련 참고사항	4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검사/의무보험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- 신규등록 ▪ **이전/변경등록** ▪ 말소등록 ▪ 저당권설정등록 ▪ 저당권말소등록 ▪ 등록번호표재발급
- 등록증재교부 ▪ 등록원부발급

기본사항

-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는 때에는 양도일(잔금지급일)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.
-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상호 등)이 있을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.
-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.

구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
소유권이전등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전등록 ▪ 등록이전신청서 ▪ 건설기계양도증명서 ▪ 양도인 양수인 인감증명서 각 1부 ▪ 건설기계등록증 ▪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<p>① 자가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법인: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▸ 개인: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같음) <p>② 영업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시설대여임대차계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보험가입증명서 (해당기준에 한함) ▪ 영업용일 경우 기존 대여회사의 등록이전동의서 및 대여회사법인인감증명서 ▪ 정부수입인지 3,000원 1매 ▪ 신분증 (대리인신청시 위임장필요함) ▪ 상속 (추가서류) ▪ 상속포기서 ▪ 사망자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▪ 상속포기자는 상속포기서에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통
등록사항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등록사항변경신고서 ▪ 건설기계등록증 ▪ 변경사실 증명서류 <p>▸ 법인 및 개인사업자 (상호,주소,사용본거지 등) :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사본 \ 유동변경(지기유) : 영업용변경 :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존 대여회사 등록이전동의서 및 대여회사인감증명서</p>

등록사항변경

- 증노변경(사가중 ↔ 정업증변경) : 사업사등록증사본, 기존 내역외사의 등록이전증의서 및 내역집세인감증명서
- 대여업체변경: 기존 대여업체의 등록이전증의서 및 대여업체인감증명서, 신대여업체와의 건설기계시설물 임대차계약서
- 위임장(대리인이 신청할 경우)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

민원관련 참고사항

- 민원처리기간 : 즉시
- 취득세 공급가액의 3.4% (단,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은 3%)
- 양도증명서 상의 잔금지급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2만원 그 이후 매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
-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2만원 그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
- 상속 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2만원 그 이후 매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

Yeosu Web Contents

